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심결 사례

김 길 태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행정과 사무관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개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전문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994년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한 사례중에서 유형별로 사건을 선정하여 기재한다.

1 (주)코오롱 및 기아자동차(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건

1994. 8.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건 번호 9407 조일 470 /9407조일 462

사건내용 (주)코오롱은 공정거래법에 의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코오롱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의약품 원료와 나일론 원자제품을 제조하여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제품을 비계열회사에게는 비싸게 판매하고, 계열회사에게는 싸게 판매하거나, 대금지불조건을 비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에게 유리하도록 해 주는 등 비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한 행위를 하였다.

기아자동차(주)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아그룹'의 계열회사로서 다른 계열회사들에게 계열회사인 기아전자(주)가 생산한 전자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거나, 국내 고철의 수급 파동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제조과정이나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철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회사인 기아특수강(주) 등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비계열회사에 비하여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한 행위를 하였다.

또한 계열회사들에게 기아자동차(주) 자신이 생산한 차량을 이용하는 납품업체들만 사내 출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열회사의 납품업체들이 계열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기아자동차(주) 자신이 생산한 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심결요지 (주)코오롱이 비계열회사에 비해 계열회사에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그 지불 조건을 계열회사에게 유리하게 해 준 행위에 대하여 판매 수량이나 제품의 질, 결제 조건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하게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한 차별적 취급행위로 인정된다.

기아자동차(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들에게 다른 계열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거나, 생산이나 운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다른 계열회사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철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한 행위는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들에게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정된다.

아울러 계열회사들에게 자기가 생산한 차량을 이용하는 납체업체들에게만 사내 출입을 허용하도록 한 행위는 그것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의 납품업체들이 기아자동차(주) 자신이 생산한 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도록 강

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열회사들에게 거래강제 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정된다.

조치내용 (주)코오롱의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가격, 결제조건 등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비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등의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아자동차(주)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들간에 계열회사의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거나 판매하도록 하는 등 계열회사들에게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시정명령과 함께 납품업체등이 사용하는 차량을 계열회사가 생산하는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등 계열회사들에게 거래강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설 계열회사간에 거래를 할 때는 비계열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거의 관행화되어 있는 까닭에 그러한 거래행태가 불공정한 거래라는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계열회사간의 거래에 있어 비계열회사와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가 된다.

따라서 본 사건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조 차별적 취급조항의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취급, 즉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게 하는 행위에 속하므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된다.

2 4개 백화점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1994. 8. 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건번호 9406 경총 486~489

사건내용 현대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강개발산업(주)와 미도파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미도파, 건영 몸니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건영유통, 센토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모아유통(주) 등 4개 백화점에서는 식품류에 가공 일자를 표시함에 있어 전날 팔다남은 식품류의 가공 일자를 떼어내고 재포장을 한 후 판매 당일을 가공일자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심결요지 상품 가치가 있는 재고 식품에 대하여 그 다음날 다시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등을 판매하고 있고, 특히 일반 재래 시장보다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훨씬 높은 백화점에서 전날 팔다 남은 식품에 대한 가공일자를 판매 당일로 변경하여 표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표시 행위는 일반 소비자가 '가공일자'를 어떤 식품이 백화점매장에 처음 들어와서 판매되기 시작한 날짜라고 인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백화점의 식품 판매대에서 팔리고 있는 식품이 매우 신선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또한 백화점 식품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대부분이 식품 구입의 기준으로 당해 식품의 질 및 신선도를 제일 우선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4개 백화점의 본건 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 할 것이다.

조치내용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백화점에 대하여 각각 식품의 가공 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중지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본건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각각 5백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해 설 상품에 대한 표시나 광고는 소비자가 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상품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성은 용인된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표시 광고한다거나 실제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과장한다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하도록 속인다거나 하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어 소비자는 나쁜 품질의 상품을 좋은 것으로 알고 사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좋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됨은 물론 이로 인해 국가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3 (주)수인가스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건

1994. 9. 28.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건번호 9407 경정 511

사건내용 (주)수인가스는 (주)유공 및 (주)유공가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해오다가 계약 기간중인 1994년 7월 18일 현대정유(주)와 신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충전소의 보수 및 영업활동 지원금으로 무이자로 15억 원, 유이자(연리 12%)로 35억 원, 합계 50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조건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와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현대정유로부터 유공 및 유공가스와의 기존 거래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발생될 채무상환을 위하여 무이자로 20억 원을 계약체결당일에 지급받았다.

이후 수인가스는 현대정유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유공 및 유공가스에게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최고기간도 주지 않은 채 대리점계약 해지통고를 하는 한편 계약해지를 위하여 채무변제용으로 일정한 금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서 유공으로부터 구입하는 구매량을 줄이는 대신 나머지를 현대정유로부터 구입하기에 이르자 현대정유는 당초에 계약 조건으로 되어 있는 자금 지원액 모두를 지급하였다.

심결요지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계약기간중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계약해지사유와 함께 계약만료 일정기간 이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그 계약 만료일에 이르러 정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인가스는 계약기간중에 유공 및 유공가스에 대해 특별한 계약해지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서 계약해지 일자를 통지일의 불과 일 주일 후로 명시하는 한편 계약해지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였음은 물론 일방적으로 유공으로부터의 구매량을 줄이고 현대정유로부터 가스를 구매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현대정유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본건 행위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본건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조치내용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인가스에게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과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중지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중앙일간지에 광고하도록 하였다.

해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유이다. 또한 한 번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면 언제나 계속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나 거래 상대방 제품의 품질과 가격여하 등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도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자와 거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거래거절 행위가 부당한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를 판단하여 부당한 경우에만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떠한 거래거절 행위가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나 부당한 경우를 몇 가지 예로 들어 보면, 거래 상대방에게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했다고 해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라든가, 자신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공급하면서 거래 상대방이 이를 공급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본건의 경우와 같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상대방과 계약해지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한 기간의 유예기간(최고기간)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거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이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주)안국상사의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대한 건

1994. 11. 9.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건번호 9407 경정 430

사건내용 (주)안국상사는 94년 6월 16일 (주)한국중공업이 발주한 태인화력발전소 1,2호기의 발전설비용 터빈유 초도물량 경쟁입찰(입찰물량 1,032드럼, 예정 가격 185,360천원)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을 1원으로 하여 응찰한 결과, 본건 입찰에 함께 참여한 경인에너지(주)등 4개 경쟁사업자를 물리치고 본건 입찰에서 1원으로 낙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중공업과 1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질요지 안국상사가 터빈유 1,032드럼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계약 금액 1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가격은 안국상사가 제조업체인 (주)유공으로부터 터빈유를 구입하는 가격 187,617천원에 비해 그 구입원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터빈유의 수요처인 (주)한국중공업의 입찰 당시 예정 가격 185,360천 원에 비교해 볼 때도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발전소의 터빈유는 초도물량으로 사용된 터빈유를 계속해서 20년 이상 보충 물량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는 특성이 있는 까닭에 초도물량 입찰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면 향후 20년간 독점공급체제를 갖추게 되어 독점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에서 본건은 안국상사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계약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킨 행위라 할 것이다.

조치내용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상사에게 장기간동안 상품을 거래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여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계약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중지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중앙일간지에 광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건 행위의 중대성등을 감안하여 2천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해 설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거래 가격은 당해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당해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거래가격은 경우에 따라 등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경쟁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특정 상품의 거래 가격을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등의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당해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5 백제교 가설공사 입찰 참가 16개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994. 12. 19.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건번호 9410 공동 654

사건내용 삼부토건(주)등 국내 유수 16개 건설업체들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백제교 가설공사(충남 부여군 소재)입찰에 참가하면서 삼부토건(주)의 입찰담당 임원이 본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건설업체중 현대건설(주) 12개업체의 입찰담당 임원들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본건 공사는 자기회사에게 연고권(緣故權)이 있음을 알리고 자기 회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머지 선경건설(주)등 3개업체에게는 자기의 부하 직원을 시켜 협조 요청을 하자 이들 15개 건설업체들은 이에 협조하여 입찰 당일 일부업체는 삼부토건(주)가 자기의 입찰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 및 입찰서를 배부받아 자신의 인감만을 날인하여 응찰하였고, 또 다른 일부업체는 자신들이 작성해간 입찰내역서 및 입찰서를 입찰 현장에서 삼부토건(주)의 입찰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정해서 응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협조함으로써 본건 공사 입찰에서 삼부토건(주)가 최저가로 낙찰되도록 하였다.

심결요지 백제교 가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16개업체는 사전에 협조요청을 받고 삼부토건(주)가 대신 작성하여 배부한 입찰내역서 및 입찰서상의 금액으로 응찰하거나 삼부토건(주)의 요청에 따라 입찰금액을 수정하여 응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삼부토건(주)를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는 본건 입찰에서 16개업체들이 사전에 합의를 해서 입찰금액을 삼부토건(주)의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할 것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 가격은 입찰 참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입찰에서의 낙찰자는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사전 담합을 통하여 특정 업체의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할 것을 결정하여 응찰함으로써 그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것은 당해 입찰에 있어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조치내용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업체들에게 건설공사 입찰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거나 입찰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중지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중앙일간지에 16개업체가 연명으로 광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위반 행위의 중대성등을 감안하여 본건 입찰에 참여한 16개 법인과 16개 법인의 입찰담당 임원들을 각각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여 행정벌을 받도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위반 행위를 주도한 삼부토건(주)에 대하여는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조달청에 요청하였다.

해설 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운용해 오면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관서장은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시정명령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과 행위자를 모두 사적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한 사건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소위 연고권을 내세워 경쟁을 하지 않고 당해공사에 연고권이 있는 업체를 밀어 주고 밀어받는 방법으로 거의 관행적으로 입찰에 응해 왔다. 그러한 까닭에 정부 건설공사 발주시 공개경쟁 입찰에서 외형적으로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쟁을 하지 않고 낙찰받게 됨으로써 건설업분야에서 경쟁력이 저하되어 부실공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국내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행위는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피하면서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장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전에 협의나 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까닭에 공동 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품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매우 커지게 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공동행위에는 본건과 같은 가격 관련 공동행위뿐만 아니라 판매 조건, 대금지급 조건, 생산·출고·수송 또는 판매의 제한,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상품의 종류나 규격 등과 관련한 공동행위가 있으며, 이러한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게 된다.

6 (주)꼬까방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994. 12. 19.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 사건번호 9406 경정 642

사건내용 (주)꼬까방은 유아용 의류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기와 별개의 사업자인 대리점들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이들로부터 부동산, 동산 등의 담보물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기간중 이외는 별도로 백지당좌수표를 보관해 오면서 대금결제 기일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기일 이전에 백지당좌수표를 사용하여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부도를 내게 하거나 예고없이 백지당좌수표에 미수금 전액을 기재하여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부도를 내게 하는 등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심결요지 (주)꼬까방은 대리점들이 자기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이상 미수금 정리등의 문제가 있어 쉽게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등의 담보를 확보하고 그 담보액의 범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들에게 추가로 백지당좌수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해 오면서 이 백지당좌수표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대리점이 부도를 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조치내용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꼬까방에 대하여 담보 이외에 백지당좌수표를 제출받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중지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각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조치하였

다. 또한 본건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해설 일반적으로 상품의 거래를 할 때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이 적합하고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며,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래조건을 결정하게 되고 이후 그 거래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나 거래 기간중 힘이 있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상대방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다든가, 거래 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한다든가, 경영에 간섭을 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힘이 있는 쪽이 유리하게 되고 그 반대인 힘이 약한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므로 거래 당사자간에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는 힘이 있는 쪽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8개 잡지 출판사의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에 대한 건

1994. 12. 26.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건 번호 광고 642, 736

사건내용 월간 잡지 「쎄씨」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종양일보사, 「필」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조선일보사, 「희가로」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향신문사, 「퀸」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서울신문사, 「이브」와 「행복이 가득한 집」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디자인하우스, 「マイウェ딩」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웅진출판사, 「우먼센스」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서울문화사, 「메종」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가야미디어 등 8개 잡지 출판사들은 각 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자사가 발행한 월간 잡지를 판매하면서 창간 기념등의 명목으로 잡지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고급화장품등을 덤으로 주거나, 잡지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추첨권을 나누어 주고 난 후 후일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소비자에게 엑센트 승용차등을 덤으로 주었다.

심결요지 잡지 출판사들이 자기가 발행한 잡지를 판매하면서 잡지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덤으로 화장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공정거래법상 '소비자경품'에 해당되며, 또한 잡지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추첨권을 배부하고 후일 추첨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승용차등을 제공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소비자현상경품'에 해당된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소비자 경품이나 소비자 현상경품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경품류 제공과 관련한 고시규정에 그 제공 한도(경품의 개당 가격 한도와 총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총액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8개 잡지 출판사들은 이러한 고시규정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조치내용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잡지 출판사에 대하여 각각 소비자 경품과 소비자 현상경품을 고시규정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중지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본건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각각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해설 사업자가 경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다른 상품을 덤으로 주는 경우에 이를 공정거래법상 '경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품은 고객 유인의 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는 자신이 사고자 하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 등을 검토하여 품질이 좋고 가격이싼 상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나, 만일 덤으로 주는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게 된다.

즉 자신이 사고자 하는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 할지라도 덤으로 주는 상품에 혼동되어 소비자가 그러한 상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품질이 좋고 값이싼 소위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당해 시장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면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덤으로 주는 상품을 늘려나갈 경우에 얼핏 보아서는 좋은 것 같이 보이나 덤으로 주는 상품을 늘리더라도 사업자는 어떻게 하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덤으로 주는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오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덤으로 주는 상품을 늘리는 대신 당해 상품의 가격을 적절하게 인하하든지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는 물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덤으로 주는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8 5개 예식장의 거래강제 행위에 대한 건

1994. 12. 26.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건 번호 9411 경총 741-5

사건내용 대구직할시에 소재한 명성예식장, 부산직할시에 소재한 예식장축복 및 목화예식장,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재향군인회예식장, 대전직할시에 소재한 신신농장예식원 등 5개 예식장업체들은 예식장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자기 예식장의 드레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예식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방법으로 드레스 이용을 강요하거나, 드레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신 결혼 사진을 더 많이 찍을 것을 강요하는 등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예식장 이용과는 별개의 상품인 드레스등을 이용하도록 강요하였다.

심결요지 일반적으로 결혼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드레스실등을 운영할 수는 있을 것이나, 예식장 이용과 드레스실 이용은 서로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으로 거래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드레스실이나 사진관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느 드레스실이나 사진관을 선택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식장업체가 고객에게 이의 이용을 강요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예식장 이용료는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대로 받도록 해왔으나 94년 8월 2일부터는 정부의 자율화 방침에 따라 예식장업체가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식장에서는 예식장 이용료금 자율화 이후에도 드레스 이용 등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당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5개 예식장의 행위는 예식장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이외는 별개인 드레스등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조치내용 본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예식장에 대하여 각각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드레스등의 이용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거래강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중지명령을

심결사례 및 해설

내림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중앙일간지 또는 지방일간지에 광고하도록 함은 물론,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예식장 출입구 등 고객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전지크기로 공표문을 작성하여 30일간 부착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예식장 이용요금 자율화 이후에도 드레스등의 이용을 강요한 명성예식장 및 예식장축복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형사 고발조치하였으며, 나머지 3개 예식장에 대해서는 각각 5백만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해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자기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촉진 활동을 할 수 있을 뿐 소비자에게 자기의 상품, 그것도 인기가 없는 상품을 사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만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자기 상품 구입을 강요하게 되면 소비자는 시장에서 품질 좋고 값이싼 상품을 선택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시장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거래강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것이다.

본건과 같은 거래강제 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는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면서 인기가 없는 다른 상품인 드레스등을 끼워서 판매한 것이라 하여 '끼워팔기'라고 한다. 이러한 예식장의 끼워팔기에는 드레스 이외에 음식점의 이용 강요라든가, 비디오의 이용 강요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끼워팔기에는 본건과 같은 경우 이외에 예컨대 술제조업자가 술도매상에게 술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는 소주 5상자를 구입할 때마다 인기가 없는 포도주등을 1상자씩 구입하도록 끼워서 판매하는 경우등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94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한 바 있는 수 많은 심결사례중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몇 가지 주요 심결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당해 사건의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보다 알기쉽게 해설을 가미하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어떤 것이고 왜 그것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엇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개념을 짓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이든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그 시장 상황도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한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만이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릇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이 상식을 벗어나는 법률 규정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므로 자기가 행한 어떠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자신과 그 행위를 당한 쪽의 입장에서 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이 억울하게 느껴지거나 매우 불리하다고 느껴지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어느 규정에든지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공정거래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쪽으로, 즉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값이싸고 품질이 좋은 상품의 개발을 촉진시켜 대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는 물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쪽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다.

KDI에서 발간하는 공정거래 관련도서를 안내합니다.

우리나라 自動車産業의 嘗面課題와 産業組織政策

劉承旻 외, 연구보고서 94-07, 1994. 12, 356면, 11,600원.

企業結合－經濟的效果과 規制

李奎億·朴炳亨, 연구총서 66, 1993. 6, 506면, 11,000원.

기업결합의 동기와 효과를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제1부에서는 기업 결합의 경제적 효과를, 제2부에서는 각국의 규제 정책을 개관하였다. 끝으로 각국의 관리법규를 부록으로 구성하고 있다.

市場去來의 規制와 競爭政策

申光湜, 연구총서 65, 1992. 11, 426면, 12, 000원

시장에서의 거래 관계와 행위를 주제로 하여 주요 행위 유형별로 경제적 효과 및 경쟁정책상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시장 거래에 대한 규제 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각 장마다 특정 거래행위 유형에 대하여 경쟁 효과를 분석, 우리의 법 이론과 규제 실적 및 美·日의 주요 사례들을 검토하여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방대한 범위를 다루었다.

廣告의 產業組織과 規制

李奎億·劉承旻, 연구보고서 92-03, 1992. 10, 270면, 7,200원

韓國 財閥部門의 經濟分析

丁炳然·梁英植, 연구총서 64, 1992. 8, 324면, 9,200원

재벌 문제의 소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개념과 분석의 틀을 채용할 뿐 아니라 독자적 방식에 의한 통계로써 한국 재벌의 경제적 실상을 경제력 집중, 소유 구조, 경영 체제의 세 측면에서 심층 분석하였으며, 이에 입각하여 재벌에 대한 논의와 정책상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법경제연구(I)

李奎億·이성순 외, 연구보고서 91-02, 1991. 8, 296면, 7,400원

經濟規制와 競爭政策(II)－主要產業別 競爭促進方案－

李奎億·金鍾奭, 연구보고서 90-11, 1990. 11, 424면, 10,000원.

Ownership-Management Relations in Business; With Special Reference to Business Groups in Korea,

李奎億, Working Paper 90-16, 1990. 10, 45면, 2,000원.

企業集團과 經濟力集中

李奎億·李在亨, 연구보고서 90-04, 1990. 6, 178면, 4,200원.

經濟規制와 競爭政策

李奎億·金鍾奭, 연구보고서 89-05, 1989. 10, 338면, 7,600원.

The Relationship between Small or Medium Firms and Large Firms in Korea

李奎億, Working Paper 88-14, 1988. 11, 36면, 2,000원.

Recent Development in Industrial Organizational Issues in Korea

Shujiro Urata·李奎億·최인범, Working Paper 86-09, 1986. 12, 46면, 2,000원.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李奎億·李在舜, 연구보고서 85-02, 1985. 9, 234면, 5,000원.

市場과 市場構造－우리나라의 製造業을 중심으로－

李奎億·李在亨·金周勳, 연구보고서 84-06, 1984. 12, 176면, 4,000원.

市場構造와 獨占規制－韓國의 製造業을 中心으로－

李奎億, 연구총서 18, 1977. 5, 370면, 8,000원.

우리 경제는 60년대 이래 고도성장 과정에서 시장 구조의 독과점화가 수반되어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저해되어 왔다. 따라서 독과점의 규제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본서에서는 시장 구조와 독과점 규제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KDI도서회원제

■ 회원에 대한 특전 : 회원가입기간(1년)중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우승해 드립니다.

■ 회비 : 100,000원

■ 가입방법 : 직접 본원 빌간자료상담실에 불입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본원 우편대체계좌(계좌번호 010983-31-0514919)에 불입하면 됩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우편번호 130-012) KDI 발간자료 상담실(전화 960-3283/ 960-4811(교)305)